제942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·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·공개(신설) ㅇ 필요시 일정 규모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, 보고받은 거래가격을 공개 ▶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	1.비중요
2	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신설(강화) ㅇ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▶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.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(강화) ㅇ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 ▶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 제도 도입(신설) ㅇ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 – 1)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공급량보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되도록 정량 공급 의무를 규정함 – 2)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 공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, 그 측정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– 3)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량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. ▶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,제26조의5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어선 위치보고 의무(신설) ○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에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, 조업을 할 때에 어선의 위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8조 2.어획보고, 양륙실적보고 의무 신설(신설) ○ (어획보고) 연근해어업의 허가등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조업일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실적 또는 전재실적을 보고 하여야 함 ○ (양륙실적보고) 어선소유자가 포획 및 채취한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양륙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9조,제13조 3.지정양륙항이 아닌 항만에서 양륙 금지(신설) ○ 정부 또는 지자체는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항만, 어항 중 수산자원의 양륙장소를 지정하고 비지정 양륙항에서의 수산자원의 양륙을 금지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11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어업감독공무원의 조치, 명령 등을 따를 의무 신설(신설) ㅇ 어선이 불법어업등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양륙검색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선소유자에게 양륙검색을 위한 사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어업감독공무원은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양륙항, 어선, 그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어선소유자에게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음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12조,제22조 5.어획확인서 전달 및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 신설(신설) ㅇ (어획확인서 등의 전달 및 사용) 어선소유자가 양륙실적 보고를 완료한 경우 위치 및 어획보고 이행 등을 확인하여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, 수산자원을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어획확인서를 전달토록 의무화 ㅇ (어획증명서 제출)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15조,제17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국가보훈부)	1.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의무 이행 실적 공표(신설) 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▶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	1.비중요
6	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국가보훈부)	1.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의무 이행 실적 공표(신설) 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▶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	1.비중요
7	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국가보훈부)	1.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의무 이행 실적 공표(강화) 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▶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	1.비중요
8	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국가보훈부)	1.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의무 이행 실적 공표(신설) 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▶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국가보훈부)	1.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의무 이행 실적 공표(강화) 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▶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	1.비중요
10	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국가보훈부)	1.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의무 이행 실적 공표(강화) 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▶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	1.비중요
11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국가보훈부)	1.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의무 이행 실적 공표(신설) ㅇ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▶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(여성가족부)	1.성범죄자의 아동·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기관 확대 및 점검·확인(신설) ○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 외국교육기관*과 청소년단체**를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, 교육청이 운영 등을 점검·확인토록 함 *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**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또는 등록한 법인 및 단체 ▶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,제57조	1.비중요
13	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지역제한 공개 모집(신설) ○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▶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의2 2.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취소(강화) ○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·시설·장비의 운영 현황 및 정기검사 수행 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○ 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▶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4	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(행정안전부)	1.청사 출입자의 출입제한(신설) ○ 청사 보안을 위해 정한 출입관리기준(출입 절차, 물품 반입 · 반출 등)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▶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.청사 출입자의 질서유지(신설) ○ 폭발, 화재, 무단침입 등 각종 유형의 위해행위로부터 안전한 청사를 위해 출입자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,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호인력의 신체적인 유형력(有形力) 행사 및 보안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 ▶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	1.비중요 2.비중요
15	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휴가 및 단축근무 실시 의무 강화(강화) <배우자 출산휴가> ○ 분할사용 횟수를 1회→ 3회로 확대 <난임치료휴가> ○ (기간 확대)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("연간 3일<1일 유급>" → "연간 6일<2일 유급>") ○ (비밀유지 의무 신설) 난임치료 휴가 신청 사실 등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부과 <육아기 근로시간 단축> ○ (대상연령 확대)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12세 이하 또는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○ (기간 확대)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미사용 기간(1년-사용한 육아휴직 기간)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확대(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→ 최대 36개월까지 확대) ▶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,제18조의3,제19조의2	
16	근로기준법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임산부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(강화) ○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(“12주 이내, 36주 이후” → “12주 이내, 32주 이후”) ▶근로기준법 제74조	1.비중요